

醫 療 法 施 行 規 則 -I-

[1962. 5. 7保社部令第77號]

改正 1963. 6. 1保社部令第110號

1964. 11. 23保社部令第148號

1965. 7. 31保社部令第161號

1966. 9. 12保社部令第183號

第 1 章 免 許

第 1 條 (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 또는 看護員의 免許申請) 醫師·齒科醫師 또는 看護員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 1 號書式에 依한 申請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所存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 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1. 醫療法(以下法이라 한다) 第18條 第1號 第2號·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가 아님을 證明하는 醫師의 診斷書
2. 法第 18條 3號의 規定의 該當하는 者가 아님을 證明하는 區廳長(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) 또는 市·邑·面長의 身元證明書
3. 寫眞3枚(6月 以下에 脫帽正面으로 撮影한 名啣版)

第 2 條 (助産員의 免許申請) 助産員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2號 樣式에 依한 申請書와 前條第 1 號 乃至 第 3 號 以外에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綜合病院으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醫療機關長의 修習 證明書を 添附하여 住所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 <改正 1966. 9. 12 保令183>

1. 月平均分娩件數가 30以上이 되는 綜合病院 또는 病院
2. 修習生數가 月平均 分娩件數의 3分之 1 以下가 되는 綜合病院 또는 病院

第 3 條 (登錄臺帳의 記載事項) 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·助産員 또는 看護員의 登錄臺帳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.

1. 登錄番號 및 登錄年月日
2. 本籍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·釜山市 또

는 道名(外國人은 그 國籍) 姓名·生年月日 및 性別(改正 1966. 9. 12 保令 183)

3. 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 또는 看護員國家試驗合格 年月日(助産員에 있어서는 看護員 免許番號·修習課程을 畢한 綜合病院 또는 病院의 名稱)
4. 免許取消 또는 業務停止處分에 關한 事項
5. 免許證의 書換 또는 登錄의 抹消事由 및 그 年月日
6. 專門科目 및 標榜許可를 받은 年月日

第 4 條 (登錄臺帳訂正申請 또는 免許證書換) ① 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·助産員 또는 看護員이 登錄臺帳이나 免許證의 記載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登錄臺帳의 訂正 또는 免許證의 書換을 申請하여야 한다.

② 前項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別紙第號 書式에 依한 申請書에 免許證과 그 證憑書を 添附하여 住所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 <改正 1966. 9. 12 保令183>

第 5 條 (免許證의 再交付) ① 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·助産員 또는 看護員은 免許證을 毀損 또는 紛失하였을 때에는 免許證의 再交付를 申請 하여야 한다.

② 前項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 4 號 書式에 依한 申請書에 그 毀損된·免許證을 添附하고 紛失하였을 때에는 그 事由를 申請書에 記載하여 住所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 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第 6 條 (死亡 또는 失踪의 申告) ① 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·助産員 또는 看護員이 死亡 또는 失踪의 宣告를 받았을 때에 그 家族은 30日

以內에 死亡 또는 失蹤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.

② 前項의 申告를 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 第 5號 書式에 依한 申告書에 免許證을 添附하여 住所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 但 免許證을 所持한채 失蹤하였거나 免許證을 紛失하였을 때에는 그 事由를 申請書에 記載하여야 한다. 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③ 死亡 또는 失蹤의 宣告를 받은 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·助產員 또는 看護員이 그 소속되었던 醫療關係者 團體의 代表者는 그 家族에 갈음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할 수 있다. <新設 1966. 9. 12 保令 183>

第7條 (免許證의 返還) 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·助產員 또는 看護員은 法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의 取消 處分을 받았을 때 또는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證을 再交付 받은 後 紛失하였던 免許證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住所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返還하여야 한다. 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第8條 (申告) 醫療法 施行令(以下 令이라한다)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定期 申告는 別紙 第6號 書式에 依한 申告書에 그 所屬된 醫師會·齒科醫師·漢醫師·助產員 또는 看護員의 會員임을 申告書에 確認받고 身元證明書를 添附하여 所存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 但外國에 滯在中인 者는 申告書만을 直接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할 수 있다. 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第9條 (手數料) ① 醫師·齒科醫師·漢醫師·助產員 또는 看護員의 免許에 關한 手數料는 다음과 같다.

1. 免許手數料 5百圓
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2. 書換 또는 再交付手數料 3百圓
<改正 1966. 9. 12 保令 183>

3. 登錄證明書

3百圓

改正 1966. 9. 12 保令 183)

② 前項의 手數料는 收入紙로써 納付하여야 한다.

第2章 醫療業務

第10條 (診斷書의 記載事項) ① 醫師·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診斷書를 交付할 때에는 다음 의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.

1. 患者의 住所·姓名·年齡 및 住別
2. 病名
3. 發病年月日
4. 向後治療에 對한 所見
5. 診斷年月日
6. 診斷한 醫師·齒科醫師 또는 漢醫師의 資格免許番號 및 住所<改正 1963. 6. 1 保令110>

② 疲病의 原因이 傷害로 因한 것일 때에는 前項 各號의 事項 以外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.

1. 傷害의 原因 또는 推定되는 傷害原因
2. 傷害에 對한 所見

③ 病名의 記載에 있어서는 世界保健機構에서 定한 疲病傷害 및 死因 分類表에 依함을 原則으로 한다.

第11條 (死亡診斷書 等の 記載事項) ① 醫師·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屍體檢案書 또는 死亡診斷書를 交付할 때에는 別紙 第7號 書式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.

1. 死亡者의 本籍·住所·姓名·年齡·性別 및 職業
2. 發病 年月日
3. 死亡年月日時分
4. 死亡場所(醫療機關에서 死亡하였을 때에는 그 名稱을 包含한다)
5. 死亡의 種類
6. 死亡原因 및 懼惡期間
7. 其他 身體狀況
8. 手術을 하였을 때에는 手術의 主要所見 및 手術年月日(醫師·齒科醫師에 限한다)